

운 영 위 원 회 부 의 안

의안번호	제2011 - 28호
의 결 년 월 일	2011년 10월 12일

의
결
사
항

재활보조기구 본인 부담금 산정기준(안)

제 출 자	운영지원팀장 이 보 현
제 출 년 월 일	2011년 10월 12일

[재활보조기구 본인 부담액 기준(안) 심의에 관한 건]

1. 의결주문

우리 연구소에서 공급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 급여 제품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적용 기준 (안)을 수립, 심의 의결코자 함.

2. 제안이유

- 현재 재활보조기구 급여시 본인 부담금 산출을 위한 일반관리비 적용기준이 센터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, 이에 대한 통일된 적용기준(안)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적용대상자

- A. 비산재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품목 이외의 산재급여 품목을 요구시 적용율.
- B. 산재,건보등 각 재정별 환자에 대한 특수 부품을 요구시 적용율
- C. 진료비 감면 사무처리 지침(제6조와 관련 제3조 제1호 내지 제15호)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지급시 동일 감면 적용 여부 검토.

○ 적용 품목

- D. 완성제품 : 휠체어, 욕창방지용품 등
- E. 의지.보조기 제작용 완성부품

4. 심의사항

○ 본인부담금 적용율

- A. 비산재 환자가 건강보험 급여품목 이외의 산재급여 품목을 요구시 적용율.

[전자의수, 넓적다리의지(공압식또는유압식), 넓적다리의지(인공지능식)]

- 산재수가 적용

*본인부담금 = 해당품목의 산재수가 - 건강보험수가

B. 산재,건보 등 각 재정별 환자가 특수 부품을 사용 요구시 적용율

*본인부담금 =

해당부품 실구입가 × (100%+10%(일반관리비)) - 해당부품 기준가

C. 진료비 감면 사무처리 지침(제6조와 관련 제3조 제1호 내지 제15호)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지급시 동일 감면 적용 여부 검토.

; 공급가액을 현행 규정상 일반 수가의 50% 이내(연구소 감면율 20%)를 실구입 가격으로 조정 적용

D. 완성제품 : 휠체어, 욕창예방용품 등

• 산 재

;공급가액 = [실구입가 + 실구입가×5%(일반관리비)]

• 비산재

;공급가액 = [실구입가 + 실구입가×10%(일반관리비)]

→현 시행 (행정팀-1675 : 2007.10.10)

* 본인부담금 = 공급가액 - 산재수가

E. 의지.보조기 제작을 위한 특수 완성부품 사용 경우 : “B” 참조

* 본인부담금 =

Σ [해당부품 실구입가 × (100%+10%(일반관리비)) - 해당부품 기준가]

※ “ Σ ”는 복수의 특수부품 사용시, 각 부품에 대한 본인부담 금액의 합계를 나타냄.

5. 참고자료

1. 현재 센터별 운영되는 일반관리비 적용율

구 분	재정	인천	창원	대전	순천	동해
외산부품 추가금 적용율	산재	5%	10%	10%	10%	5%
	일반	10%	10%	10%	10%	10%

2. 의지.보조기 부품 수가 기준표 1부.(별첨)